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35
------	-------

제출년월일 : 2017. 4.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사유

기존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2016. 8. 12.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위임 근거 조문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위임 근거 조문을 “ 「주택법」 ”에서 “ 「공동주택관리법」 ”으로 변경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1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7. 3. 23. ~ 4. 12. (제출된 의견 없음)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3)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59조제6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82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59조제4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주택법」 제45조의4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동주택의 관리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감사 대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p> <p>1. 「주택법 시행령」 제82조 각 호에서 정한 업무</p> <p>2. 「주택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p> <p>3. 4. (생략)</p> <p>② (생략)</p> <p>제4조(감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주택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p>	<p>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p> <p>제2조(감사 대상) ① -----</p> <p>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 -----</p> <p>2. 「공동주택관리법」 -----</p> <p>3.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감사계획 수립) ① -----</p> <p>「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p>

